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21
----------	-------

발의연월일 : 2026. 2. 25.

발 의 자 : 강경숙 · 황운하 · 김선민
임호선 · 진선미 · 문정복
정춘생 · 백선희 · 박은정
서왕진 · 정을호 · 최혁진
신장식 · 윤준병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 공교육 외의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인적사항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은 이를 알 수 없어 학적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학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해당 학생의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생

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적 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 10조제3항 신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중 “유예”를 “유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 해당 사실을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취학 의무 <u>유예</u>) ① · ② (생 략) <u><신 설></u>	제10조(취학 의무 <u>유예 등</u>)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이 다른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그만두는 경우 해당 사실을 취학예정 또는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